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10 선고 2020가단963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용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38,037,8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8,037,8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37,8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D 주식회사(이하 ‘소회 회사’라고 한다)는 2016. 6. 2. C에게 40,000,000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하여 주었다.

○ 이자율 및 이자 지급시기: 연 22.5% 고정금리

○ 여신실행방법 :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

○ 상환 방법 : 매 1개월마다 대출해당일에 분할하여 상환(균등분할방식)

○ 지연손해금율 :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 연체기간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인 경우 연 11%, 연체기간 4개월 이상인 경우 연 12%를 약정이율에 가산

○ 지연배상금율: 연 12%

2) 원고는 2019. 6. 17. 소회 회사로부터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소회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아 2019. 7. 2.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가 양수한 C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의 원리금은 양수일 무렵인

2019. 5. 26. 기준 원금 19,921,694원, 이자 및 연체이자 5,356,971원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21. 8. 20. 기준 38,037,865원(원금 19,922,694원 + 이자 및 연체이자 11,357,002원)이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1) C와 피고는 2007. 2.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8. 2. 5. 이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같은 해 2018. 5. 9.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2) 한편, C은 2015. 12. 28.부터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8. 2. 5.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 38,037,86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 강제집행면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C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 상당액인 38,037,8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은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은 것으로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보다 앞서 소외 회사가 C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한 2016. 6. 2. 성립하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를 양수한 시점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라도 여전히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1146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C은 2007. 2. 16.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8. 2. 5. 이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2018. 5. 9.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협의이혼 신청 당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법원으로서는 채권자의 증명에 따라 부부 쌍방의 재산 보유 상황 등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채무자의 배우자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해 다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나) 재산분할대상

(1)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참조). 또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도 그 기준일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2)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과 피고는 혼인기간 중에 적극재산을 취득하였고,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며, C은 혼인기간 중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혼신고일 무렵의 C과 피고의 재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순

재산 합계는 22,189,123원(원고의 적극재산 312,500,000원 + 피고의 적극재산 511,105,434원 - 원고의 소극재산 453,916,311원 - 피고의 소극재산 347,500,000원)이다(원, 피고의 주장 중 아래 표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소유자	구분	재산	가액 (단위: 원)	비고
C	적극 재산	충북 제천시 E 대 499㎡ 중 1/2 지분 매도대금	100,000,000	을7
		이 사건 부동산 중 1/2	112,500,000	갑5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충북 충주시 F)	100,000,000	을 40-1
		합계	312,500,000	

소극 재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혼신고일 기준 가산금, 지연손해금 등을 알기 어려우므로 원금만 포함	총주세무서 부가가치세	774,310	
		총주세무서 양도소득세	6,561,010	
		총주세무서 종합소득세	2,740,920	
		제천세무서 부가가치세	615,640	
		충주시 세정과 주민세(11,000원+55,000), 등록면허세(22,500), 종합소득세(450,570원+493,210원), 양도소득세(656,100원)	1,688,380	
		G대부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	
		이 사건 양수금 채무	19,912,694	
		H대부에 대한 대출금채무	9,992,357	
		I대부에 대한 대출금채무	9,986,000	
		J대부에 대한 대출금채무	8,000,000	
		K대부에 대한 대출금채무	5,592,000	
		L대부에 대한 대출금채무	9,824,000	
		M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265,500,000	을 7
		N에 대한 채무	5,400,000	갑9
		O에 대한 채무	4,829,000	갑 9-1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1/2	92,500,000	을 3-1
		합계	453,916,311	
피고	적극 재산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	112,500,000	갑5
		안산시 단원구 P아파트 Q호	190,000,000	갑 7-1
		안산시 단원구 R아파트 S호	208,605,434	갑 12
		합계	511,105,434	
	소극 재산	안산시 단원구 P아파트 Q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근저당권자: T 은행,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150,000,000	갑 7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1/2	92,500,000	갑 12
		안산시 단원구 R, S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근저 당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최고액 126,000,000 원)	105,000,000	
		합계	347,500,000	

다)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와

C은 혼인생활 중 적극재산을 취득한 점, 피고가 C과의 혼인생활 중 생계의 대부분을 책임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C이 부담하게 되는 소극재산이 C의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라고 하나 피고 및 자녀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C과 피고는 협의이혼 하면서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을 피고가 갖기로 하되 C이 피고에게 월 1,0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와 C의 재산분할 비율은 50%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와 C의 분할대산 순재산은 22,189,123원이고, C의 순재산은 -141,416,311원이므로 C로서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C의 자력을 부족하게 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9. 9. 16. 사망하였는바, 이후 피고가 C의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혼인기간 중 C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C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는 185,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부담이 있어 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가액은 20,000,000원 $[(225,000,000\text{원}-185,000,000\text{원})/2]$ 에 불과한 점, C은 피고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2019. 9. 16. 사망함으로써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C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 중 20,000,000원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C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상태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에서 작은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인바, 변론 종결일 무렵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38,037,865원인 사실,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초과하는 부분의 액수가 2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2. 5.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는 손해배상의 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철근콘크리트벽식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동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 52524.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 64.62㎡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52524.3분의 52.182

